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나. 연가 사용 장려를 위하여 연가제한 사유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1) 지참 ⇒ 지각

2)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휴가 사용방법 개선함.(안 제23조제11항)

1) 분할 사용횟수 : 한 번 ⇒ 세 번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10일 ⇒ 2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4.~9. 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한 번만”을 “세 번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 (생략)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u>지참·조퇴</u> 및 <u>외출</u>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각</u>-----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참·조퇴</u> 및 <u>외출</u>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병가) ① ----- ----- ----- ----- -----<u>지각</u>----- ----- ----- ----- 1.~2.(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u>한번만</u>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23조(특별휴가) ①~⑩ (현행과 같음) ⑪ ----- -----<u>세</u> <u>번만</u>----- ----- ----- ----- 1. ----- ----- 2. ----- <u>20일</u> 3. -----
--	---